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430
----------	------

2026년 3월 10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이소라 의원 등 16명
2.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6년 3월 10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소라 의원)

1. 제안이유

-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제적·폐기도서, 여분의 도서 등이 다수 발생하나 「공직선거법」상 법적 근거 없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으로 무상배부가 어려워 적극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으로 도서관 운영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바, 교육

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의 도서 기증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도서 기증·재활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 도서 기증, 제적·폐기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방법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도서 기증 문화 조성과 관련해 홍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도서를 기증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6년 2월 9일 이소라 의원 등 16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3430호로 발의되어 2026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동 조례안은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다수 발생하는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으로 도서관·평생학습관의 도서 기증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고자 발의되었음.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 소관 도서관(17개) 및 평생학습관(4개)에서는 도서(자료) 구입비로 평균 약 36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약 26만 권 이상의 도서를 제적·폐기하고 있음.

[표-1] 최근 5년간(2021~2025) 도서관, 평생학습관 도서(자료) 구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21	2022	2023	2024	2025
3,542,067	3,628,582	3,615,864	3,586,352	3,726,077

[표-2] 최근 5년간(2021~2025) 도서관, 평생학습관 제적·폐기 현황

(단위: 권)

기관명	연도별 제적 및 폐기권 수				
	2021	2022	2023	2024	2025
강남도서관	11,370	11,401	10,803	11,210	10,069
강동도서관	13,071	12,389	13,183	12,301	8,739
강서도서관	12,505	17,002	28,667	9,249	10,440
개포도서관	15,729	14,180	78,893	-	1,177

기관명	연도별 제적 및 폐기권 수				
	2021	2022	2023	2024	2025
고척도서관	9,806	6,928	27,672	15,537	12,367
구로도서관	6,355	9,647	12,260	10,936	10,057
남산도서관	25,030	11,138	10,911	12,299	11,415
도봉도서관	12,145	10,460	14,994	15,846	15,559
동대문도서관	12,746	11,549	13,825	9,549	9,841
동작도서관	11,296	10,679	58,804	1,654	8,527
서대문도서관	9,716	7,261	14,353	14,974	13,589
송파도서관	11,509	11,456	11,604	10,536	11,744
양천도서관	15,157	13,751	13,268	13,975	13,156
어린이도서관	21,030	21,255	21,180	19,107	18,690
용산도서관	11,430	19,463	21,233	17,968	13,799
정독도서관	9,172	21,029	23,760	32,945	24,300
종로도서관	10,910	13,630	16,797	12,821	16,241
고덕평생학습관	12,357	9,613	9,715	9,852	10,907
노원평생학습관	12,436	12,980	17,972	12,583	11,689
마포평생학습관	12,664	13,370	11,755	16,264	10,519
아현분관	1,764	8,279	6,014	5,338	8,227
영등포평생학습관	10,508	15,688	11,126	12,206	10,527
합계	268,706	283,148	448,789	277,150	261,579

○ 이처럼 활용되지 못하고 제적·폐기되는 도서(자료)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그동안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기부)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일반 선거구민에게 폐기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¹⁾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답변 내용

○ 질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도서관법」 또는 도서관 관련 조례에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 무상배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동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일반 선거구민에게 폐기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음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이미 조례가 제정됐으나 무상배부 조항이 없는 기관에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²⁾

○ 따라서 동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제한되어 왔던 지자체 도서관 도서 기증을 합법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적·폐기 도서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불필요한 폐지를 줄여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서관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입법조치로 판단됨.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어 안 제4조 및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도서 기증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개인·기관·단체의 도서 기증과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구성체계는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

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461(2025.9.19.) 제도개선 권고(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으며, 관련 지침³⁾ 등도 대체로 준수하고 있는바, 형식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정의에 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는 “도서관”, “도서 기증”, “제적·폐기” 등 동 조례 안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2조제1호는 “도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동 조례안이 도서관의 개념에 평생학습관을 포함하여 정의함으로써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능상 도서관과 중복되는 평생학습관도 도서 기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의로 판단됨.

- 또한 안 제2조제2호 “도서 기증” 및 제3호 “제적·폐기”는 일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개념이지만, 도서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3) 책무(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는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9.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_증보판)’, 법제처, 2024.1.

- 「도서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 따라서 도서 기증 자체가 예산 부담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⁵⁾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⁶⁾와 제35조⁷⁾에 근거하여 교육감에게 관련 책무를 부여한 것은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는 교육감이 도서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5년마다 도서 기증 활성화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은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도서 기증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는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며,

4)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7)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토대로 세부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서관 무상배부 조례 제정 권고와 함께 ‘폐기 도서 등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⁸⁾, ‘제적·폐기 도서의 선별 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 활용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5)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안 제6조는 개인·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과 기증 도서의 접수, 등록 여부, 활용방법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도서관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⁹⁾ 및 시행규칙 제14조(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¹⁰⁾에 따라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부 절차를 조례 차원에서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8)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461(2025.9.19.) 제도개선 권고(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9) 「도서관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0)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 서약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금품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즉시 해당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표-3] 최근 5년간(2021~2025) 도서관, 평생학습관 도서(자료) 기증받은 현황

연번	기관명	2021	2022	2023	2024	2025
1	강남	567	542	200	250	549
2	강동	269	544	422	403	445
3	강서	377	728	300	188	561
4	가양관					7,916
5	개포	685	342	96	88	444
6	고척	769	1,085	374	454	513
7	구로	424	402	560	147	259
8	남산	1,248	1,202	919	451	935
9	도봉	330	367	680	395	509
10	동대문	642	1,310	951	828	759
11	동작	317	736	453	517	817
12	서대문	745	434	721	463	435
13	송파	1,072	1,180	1,017	822	938
14	양천	463	568	665	446	229
15	어린이	325	424	248	181	213
16	용산	720	649	793	708	808
17	정독	2,020	1,909	1,882	1,402	1,217
18	종로	554	994	369	534	259
19	고덕	531	1,434	837	956	1,037
20	노원	639	768	70	111	219
21	마포	480	610	866	914	1,095
22	아현분관	182	303	269	157	221
23	영등포	269	522	489	569	288
계		13,628	17,053	13,181	10,984	20,666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2012년부터 “책다모아” 사업을 통해 범국민적 도서 기증을 받아 소장 가치가 있는 자료는 국가 문헌으로 등록하고, 그 외 자료는 국내외 정보 소외지역 도서관 등에 재기증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¹¹⁾
- 다만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관별로 기증 도서 등록 및 제외 기준이 상이하고, 기증 절차를 별도 메뉴로 안내하는 기관도 일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을 계기로 등록·제외 기준 및 절차 안내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지원서비스(<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3030100000.do?schM=view&id=2248>)

[표-4] 기관별 기증자료 등록 및 제외 기준 비교(예시)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고덕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p>7. 수증·기증 및 교환자료</p> <p>수증·기증 및 교환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 관리 및 자료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에서 제외한다.</p> <p>가. 과도한 복본도서</p> <p>나. 48쪽 미만 자료</p> <p>다. 연속간행물 성격 및 개인적 성향이 강한 도서 등 공공도서관의 장서로서 부적합한 자료</p> <p>라. 기업 및 단체의 홍보자료 등(社史, 年史 등)</p> <p>마. 기초 자치단체 통계자료 서울 지역의 통계자료는 등록</p> <p>바. 단기정보, 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 정부간행물 포함</p> <p>사. 훼손 및 파손의 정도가 심한 자료</p> <p>아.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 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p>	<p>5. 기증자료</p> <p>기증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관리 및 자료 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에서 제외한다.</p> <p>가. 출판년도가 3년 이상 경과한 자료</p> <p>나.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 개정, 기술 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 등으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p> <p>다. 논문, 보고자료 및 소책자(팸플릿), 문고본, 복제자료 등 책자 형태가 아닌 낱장자료</p> <p>라. 연 또는 월단위의 행정 통계자료, 지역단체 및 기업의 홍보자료(社史, 年史 등)</p> <p>마. 개인 또는 회사, 동호회 등에서 저술한 문집, 자가 출판물, 족보자료, 평범한 개인의 전기 등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p> <p>바. 파손·오손·낙장·낙서 등 훼손 및 파손의 정도가 심한 자료</p> <p>사. 기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p>	<p>다. 기증자료</p> <p>자료로서의 소장 및 이용가치, 복본 여부, 파손도서 대체 등을 고려하여 평생학습관 장서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지역 관련 자료는 적극 수집·보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 소장자료로 복본이 필요 없는 자료 2) 개정판이 발간되어 이용 가치가 없는 자료 3) 연 또는 월 단위의 통계자료 및 타 지역단체 홍보자료 4) 기업의 홍보자료(社史, 年史 등) 5) 논문 및 보고자료, 소책자, 족보, 평범한 개인의 전기, 각종 통계자료 6) 출판된 지 5년이 경과한 자료(단 5년이 경과한 자료라도 이용과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예외) 7) 훼손 및 파손의 정도가 심한 자료 8) 각종 문제집, 제도 및 법규 개정·환경 변화 등으로 이용 가치가 상실된 자료 9) 기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 10) 등록 제외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 및 공유 서가 활용 또는 폐기할 수 있다.

[표-5] 기관별 홈페이지 기증 절차 안내 메뉴 운영 여부

번호	기관명	운영여부	비고
1	강남	X	
2	강동	O	강동도서관 홈페이지>도서관안내>이용안내>도서기증안내
3	강서	X	
4	가양관	O	강서도서관 가양관 홈페이지>열린공간>자주하는 질문
5	개포	X	
6	고척	X	
7	구로	O	구로도서관 홈페이지>열린공간>자주하는 질문
8	남산	O	남산도서관 홈페이지>열린공간>자주하는 질문
9	도봉	O	도봉도서관 홈페이지>열린공간>자주하는 질문
10	동대문	X	
11	동작	O	동작도서관 홈페이지>열린공간>자주하는 질문
12	서대문	X	
13	송파	O	송파도서관 홈페이지>열린공간>자주하는 질문
14	양천	O	양천도서관 홈페이지>열린공간>자주하는 질문
15	어린이	O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열린공간>자주하는 질문
16	용산	O	용산도서관 홈페이지>열린공간>자주하는 질문
17	정독	X	
18	종로	O	종로도서관 홈페이지>열린공간>자주하는 질문
19	고덕	X	
20	노원	O	노원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열린공간>자주하는 질문
21	마포	O	마포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열린공간>자주하는 질문
22	아현분관	O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홈페이지>열린공간>자주하는 질문
23	영등포	X	

6) 도서관의 도서 기증(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는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의 기증 대상, 기증할 수 있는 도서의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조례안 제정 취지에 비추어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공직선거법」 상 제한을 받던 도서관의 도서 무상배부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도서관법」이 규정하는 자료의 효율적 보존 및 체계적 관리의 일환으로 도서 기증을 제도화하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는 도서관의 기증 대상을 ‘기관 및 단체’로 한정하고 ‘개인’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기증 주체에 ‘개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기증 대상을 ‘기관·단체’로만 한정할 경우,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안 제7조의 기증 대상에 ‘개인’을 포함하도록 확대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교육청 또한 제정 취지에 맞추어 기증 대상에 ‘개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행정관리담당관-2277, 2026.2.20.)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상배부 절차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¹²⁾한 점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은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임.

1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461(2025.9.19.) 제도개선 권고(공공도서관 제작·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7)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검토(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안 제9조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교육감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서 기증은 도서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으로,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고,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기관 및 단체” 를 “기관·단체 및 개인” 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1항).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30
----------	------------

제안연월일 : 2026년 3월 1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7조제1항은 도서관의 기증 대상을 ‘기관 및 단체’로 한정할 경우,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기증 대상에 ‘개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관 및 단체”를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및 단체”를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7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확산 및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의 <u>기관 및 단체</u>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 ----- ----- ----- <u>기관·단체</u> <u>및 개인</u>----- -----.</p> <p>1. ~ 4.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의 재활용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을 말한다.
2. “도서 기증”이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적·폐기”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도서를 도서관 등록대장에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도서관의 장서 현황, 자료 이용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별 도서 기증 활성화 전략 및 세부 과제
3. 제적·폐기 도서의 선별 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 활용 방안
4. 도서관 도서 기증을 위한 학교, 지역사회 등 연계 방안
5. 도서 기증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6. 그 밖에 교육감이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자발적으로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는 경우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도서관장은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에 대하여 등록 여

부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도서관장은 도서 기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를 기증한 개인, 기관 및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동의한 기증자에 한하여 기증 정보의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2. 희귀자료, 귀중자료 등 우수 기증자에 대한 감사장 증정
3. 그 밖에 기증자 예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확산 및 지역 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의 기관·단체 및 개인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도서
2. 소장 도서 중 여분의 도서
3. 제적·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 기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도서 기증의 세부 절차, 기준, 대상 등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 기증 우수사례, 기증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거나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
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